

##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상생협력기금 관리기관인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급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금지원은 협력사가 중소기업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협력사가 비용을 집행한 일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의 유효기간 내 이어야 합니다.
2. 지급신청은 지원사업 연도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해당연도 내에 비용집행을 한 경우에만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사업기간 내에 집행한 비용만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은 실비(실사용금액)를 지원하오니,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원사업별 지원한도금액이 있으며, 한도 금액은 배포해드린 '2020년도 지원사업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VAT)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급신청 시 공급금액만을 신청하시되, 면세일 경우에는 전액 신청하셔도 됩니다.
5. 지급신청은 매분기 연4회로 나누어 접수(분기 익월 초)를 받습니다. 해당분기에 집행한 비용만 지원되오니 지급신청 시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6. 지급신청은 신청한 지원사업에만 국한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7. 설비투자, 전산시스템 구축, R&D투자 등의 지원사업은 실사용 확인을 위해 업체 방문.확인을 하거나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지원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기획감사팀 신동재 주임 / 053)760-3713